

'06년 12월 8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에너지환경팀장 김현철, 김영운 사무관 (2110-5427, 019-326-6096)

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 본격 가동 - '06년 업종별 기후변화대응 하반기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 -

◆ 기후변화협약대응 8개 업종별 대책반 “06년 하반기 추진실적 점검 회의”가 12.8(금) 오전 10시,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원걸 산자부 2차관 주재로 8개 업종별 대책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

※ 8개업종별대책반 : 발전, 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, 제지, 반도체, 자동차, 정유

◆ 금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대책반 '06년 추진실적과 '07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업종별 대책반 활성화 및 기능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8개 업종별대책반에 디스플레이대책반과 가스산업 대책반을 추가·구성,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대응활동이 우수한 대책반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음

◆ 특히 8개 업종별 대책반이 중점 개발 추진한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지침을 확정하고 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업종별 대책반이 공동 개발한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등록 관리시스템을 시연하는 한편 향후 이를 적극적 활용하기로 함

※ 기업의 배출량 산정시스템 개발시 소요되는 비용절감,배출량 산정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행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경영전략 추진에 기여

◆ 또한 향후 '07년 운영계획 관련, 포스트교토체제 협상 논의와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요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하여

- 8개 업종별대책반을 근간으로 정부와 업계간 협의채널인 “산업계 기후변화 협약 대응 추진협의회”를 구성하여 산업계의 “지속가능발전 전략”을 모색하고,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대응 협상전략과 국내지원시책을 개발, 기후변화협약 4차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하였음

□ 2006.12.8 오전 10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산자부 2차관 주제로 '06년 하반기 업종별 대책반 추진실적 점검 회의가 개최되어 산자부 및 건교부 등 정부관계자와 철강, 석유화학, 반도체, 자동차 등 업종별 대책반 협회 대표, 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음

※ 8개 업종별 대책반: 발전, 철강, 석유화학, 정유, 반도체, 시멘트, 자동차, 제지

□ 금번 8개 업종별 대책반회의에서는 우선 금번 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관련 포스트교토체제 주요 논의동향 결과에 대한 보고에 이어 '06년 하반기 8개 업종별 대책반 주요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및 점검이 이루어졌으며,

○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산자부와 8개 업종별 대책반간 공동으로 개발·추진해온 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침을 확정하고, 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발한 윈도우와 웹기반의 「온실가스배출량산정 등록관리시스템」을 시연하고 이의 활용을 적극 추진키로 함

□ 「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」 및 「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등록 관리시스템」은 에너지산업분야의 주관부처인 산자부와 업종별 대책반이 기후변화협약 3차 종합대책에 의거, 기후변화협약 대응 이행기반 구축 및 주요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개발해온 성과로서

○ 동 시스템의 개발로 기존의 개별기업 위주의 온실가스 배출 산정방식이 업종별로 통일된 기준의 배출량 산정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기업별, 업종별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, 관리가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

○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스템 개발시 소요되는 비용절감 및 효율적인 배출량 산정시스템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행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경영전략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
□ 또한 '07년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자발적 의무부담, 인센티브 방식에 의한 참여 등 다양한 포스트교토체제 논의 동향과 OECD, IEA 등 국내외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목표 설정 요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 전략수립을 위해

○ 8개 업종별 대책반을 근간으로 “산업계 기후변화협약대응 정책협의회”를 구성하여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“지속가능 발전 전략”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대응 협상 전략과 국내지원시책을 수립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와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4차 종합대책에 이의 반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

□ 아울러 금번 업종별 대책반 회의에서는 업종별 대책반의 활성화와 기능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8개 업종별대책반에 디스플레이대책반과 가스산업 대책반을 새로이 추가 구성하여 '07년부터 확대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대응활동이 우수한 대책반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음

※ '06년 하반기 우수 업종별 대책반 시상 : 발전, 시멘트

□ 산업자원부는 향후에도 기후변화협약 에너지산업분야 주관부처로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시스템 구축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, 인력양성 등 기후변화 관련 산업계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·강화할 계획임

<참고>

1. '06년 업종별 기후변화 대응 하반기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요
2. 교토의정서 개관 및 포스트교토체제 논의동향
3. '06년 업종별대책반 하반기 추진실적 및 '07년 추진계획
4.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등록·관리시스템 개요

참고1 '06 업종별 대책반 하반기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요

1. 개최 목적

- 8개 업종별대책반의 '06년 추진실적 점검·평가
 - ※8개 업종 : 발전, 정유, 철강, 자동차, 반도체, 시멘트, 석유화학, 제지
- 온실가스 배출량 등록시스템 구현(온실가스 배출량 산정·등록 관리시스템 활용)
- 업종별 건의사항 수렴

2. 회의 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12. 8(금) 10:00~13:00(오찬 포함), 서울교육문화회관
- 참석자 : 제2차관님(회의주제), 업종별 대책반장(담당과장), 관련 협회 상근책임자, 업종별 대표기업(2~3개)·임원

< 회의 일정 >

시 간	내 용	비 고
10:00~10:10	○冒頭말씀	제2차관님
10:10~10:20	○ COP-12, COP/MOP-2 회의결과 발표	에너지환경팀장
10:20~11:10	○ 업종별 대책반 '06년 실적 보고	각 대책반장
11:10~11:20	○ 업종별 대책반 활동평가 및 '07년도 운영방향	에너지환경팀장
11:20~11:30	○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·등록 관리시스템 시연	에너지관리공단
11:30~12:00	○ 업종별 건의 및 토론	
12:00~13:00	○ 오찬	

※ 오후에는 산업계 실무자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워크샵 개최 예정

참고2

교토의정서 개관 및 포스트교토체제 논의동향

□ 대두배경

- 온실가스 감축효과 제고를 위해 구속적인 감축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인 교토의정서 채택('97)

<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>

① 감축대상 온실가스 규정(Annex A)

- CO₂(이산화탄소), CH₄(메탄), N₂O(아산화질소), HFCs(수소불화탄소), PFCs(과불화탄소), SF₆(육불화황) 등 6가지 온실가스 규정

②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닌 부속서 I 국가와 구속적 감축목표가 없는 비부속서 I 국가로 구분

- ※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: 제1차 이행기간(2008~2012)동안 1990년 대비 등 의무 부담국가 전체 평균 5.2%를 감축하되 국가별로 차별화(△8~+10)
- EU : △8%, 미국 : △ 7%, 일본 : △6%, 러시아 : 0%, 아이슬란드 : +10%

③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시장체제(교토메카니즘) 인정

- 공동이행제도, 청정개발체제,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여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

공동이행제도(Joint Implementation) : 부속서 I 국가가 다른 부속서 I 국가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투자국의 실적으로 인정

청정개발체제(Clean Development Mechanism) : 부속서 I 국가가 비부속서 I 국가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

배출권거래제(Emissions Trading) :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(AnnexB) 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

□ 주요 경과

- 미국 및 호주 등은 자국경제 부담 및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 불참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
- 러시아의 비준('04.10)을 계기로 교토의정서 발효('05.2.14)

□ 포스트교토체제 주요 논의방향 및 국가별 입장

- 제1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(05.11, 몬트리올)시 포스트교토체제 논의 시작
 - '12년 이후 선진국 추가의무부담(AWG) 및 선개도국 장기대화협력 체제(Dialogue) 등 포스트교토체제 논의 시작
- 주요 입장
 - 개도국 :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선진국의 “선도적 의무부담” 및 “공통의 차별화된 원칙 주장
 - 선진국 : 개도국은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개도국 등 광범위한 참여 주장

< 포스트교토체제 주요국 및 그룹 입장 >

- 유럽연합(EU)은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 저감(mitigation)이 핵심이며, 산업화 이전 보다 2°C이상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(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550ppm이하 수준 안정화) 노력할 것을 주장하며
 -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선·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 필요
 - ※ 2°C 목표는 선진국들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5-30%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야 함을 의미
 - 개도국(G77/중국)은 역사적 책임에 입각한 선진국들의 우선적 감축 및 기후변화와 관련한 적응(adaptation)의 중요성을 강조
 - 미국은 현행 교토의정서 체제와 같은 절대적인 감축목표보다 기술 개발이전 및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시함
 - 일본은 교토의정서내 의무부담을 준수하면서도 선·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중요성도 강조
-
- 전문가들은 포스트교토체제 협상은 '08년까지 완성될 것으로 전망

□ 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결과

- 지난 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'05.11, 몬트리올)에서는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시작을 위한 계기마련
- 금번 12차 당사국 총회('06.11.6~17, 케냐 나이로비)는 선진국 추가의무부담 (AWG) 및 선개도국의 의무부담 확대 등 포스트교토체제 논의 가속화 예상
- '07년 이후에는 포스트교토체제 관련 주요 의무부담 목표 및 방식에 대한 협상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됨

□ 우리나라 위치 및 대응방향

-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('03, IEA기준)인바 포스트교토체제 협상 관련 의무부담 부담 가중 예상
-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을 지게 될 경우,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전망됨

< 감축의무 부담시 경제적 효과 >

- ◆ 제2차 공약기간 중('13~'17) 1995년 배출량 대비 5%를 의무부담을 받는다면, '2010년부터 실질적인 감축을 시작할 경우 매년 실질GNP에 영향을 미침
- 2015년 기준 0.75%(11.3조원), 2020년 기준 1.51%(22.8조원) 감소

* 자료 : 에너지경제연구원

- 기후변화협약을 우리기업 등의 지속가능 경제 시스템 구축의 기회로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협상대응 전략 수립
- 기후변화협약 및 APP 회의 등 국제동향분석 및 회의 적극참가
- 국내적으로는 온실가스인벤토리, 감축잠재량, 자발적감축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한 온실가스감축역량제고 기반 강화 모색

참고3

06년 업종별 대책반 하반기 추진실적 및 07년 추진계획

1. 개관

□ 배경 :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('05.1)

□ 조직 및 구성

○ 대상 : 발전·정유 등 에너지다소비업종 8개 산업

○ 구성 :

- 반장 : 담당팀장, 관련협회 상근부회장(또는 임원) 공동
- 반원 : 사무관, 협회, 에관공, 학계, 주요기업 등 10명 내외
- 간사 : 업종별담당과 사무관

업종	발전	정유	철강	석유화학
부서	총괄정책과	석유과	기초과	기초과
협회	간사발전사	석유협회	철강협회	석유화학
기업	발전사 5사	SK, LG 등	POSCO 등	LG 등

업종	시멘트	제지	자동차	반도체
부서	생물화학	생물화학과	수송기계과	반도체과
협회	양회협회	제지협회	자동차협회	반도체협회
기업	쌍용 등	한솔 등	현대, GM대우 등	삼성, 하이닉스

2. 추진실적 평가

□ 주요 성과

- 정부-업계 공동으로 기업별,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관리시스템 개발
- 업종별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자체 교육 내실화
- 온실가스 감축관련 감축수단 조사 및 감축기술 개발 연구
- APP 및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국제협력 및 선진국과 협력채널 구축

□ 개선사항

- 8개 업종별 및 업종간 협력체제 및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강화
- 업종별 대책반 운영성과 활용방안 등 개선

3. 대내외 여건 및 향후계획

□ 대내외 여건

- 국제적으로는 포스트교토체제 논의 가속화
 - 선진국 포스트교토체제 의무부담 목표 설정, 개도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참여방식 논의 등
- 국내적으로는 4차종합대 수립시 감축목표 수립 검토 제기
 - OECD, IEA등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요구
-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시책 및 국제협상 전략 수립필요

□ '07년 추진계획

- 업종별 대책반 확대·강화 : 8개에서 10개로 확대
 - ※ 가스산업, 디스플레이 등 10개부분으로 확대, 수송대책반 추가구성 검토('07)
- 정부-업계 「기후변화 대응 정책협의회」 구성 및 운영('07 상반기)
 - ※ 산업계 지속가능발전전략 등 국내정책 수립 및 협상전략 마련시 업계와 협의
-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고려한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
 - ※ 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·활용, 업계와 협의를 통해 도출한 감축잠재량, 기후변화 대응협상전략을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 수립시 반영('07하반기)
- 온실가스 감축 지원체제 확립 및 교육지원 확대
 - ※ 인벤토리, 감축실적 등록,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실적인센티브 운용('07) 등

□ 추진배경

- 산업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배출원 조사·분석과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
- 국제적 배출량 산정방법과 우리나라 국가통계 작성에 적용되는 방법론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온실가스 산정지침을 작성하고
 - 이를 바탕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업종별·기업별 배출통계 체계구축 지원을 위해 등록·관리시스템을 개발

□ 배출량 산정지침 및 등록·관리시스템(GEIS) 주요내용

- 온실가스 배출원을 조직의 운영 경계에 따라 정의(법인단위로 설정)하고, 사업장 단위로 배출량 계산 및 등록 추진
- 직접배출(고정연소, 이동연소, 공정배출, 탈루배출)과 간접배출(전력 및 스팀 구매)로 구분하고, 에너지부문과 산업공정부문을 분리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토록 함
- 계산방법을 Simple Method와 Advanced Method로 구분
 - * 에너지원별 사용량만 알고 있으면 Simple Method 적용, 설비별 에너지사용량 및 설비 기술특성 등 구체적 자료들이 있다면 Advanced Method를 적용
- 기업내 공정배출의 경우 업종별, 제품생산·소비별로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배출량 계산방법을 제시
- 에너지연료연소 배출량은 국가 공통기준으로 고시된 순발열량을 적용토록 하고, 단계별 배출량 산정절차를 명시

□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, 등록·관리시스템 Web 화면

< 접속 Web주소 : <http://geis.kemco.or.kr> >



로그인 회원가입 CONTACT US

기후변화협약이란? GEIS란? 배출량 계산하기 전문가 POOL 해외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일일머당 HOME SITEMAP 에너지관리공단

NOTICE & NEWS
공지사항입니다. [2006-10-16]

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프로그램

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

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

기후변화협약이란?

FAMILY SITE

온실	1.2
배출	866

에너지관리공단 Copyright © 2006 에너지관리공단. ALL Rights Reserved.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통정로 115번지 (우) 314-591 Tel: 1034)2604 - 114 SITE LINK site link

□ 향후 추진계획

- '06년 업종별대책반 추진실적 점검회의('06.12)에서 **배출량 산정 지침과 등록·관리시스템 기업활용 공식발표** 추진
- 자발적으로 등록한 기업별 배출량 통계는 필요시 정부 운영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 및 인정
- 국가 고유 발열량 개정 및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할 경우 **배출량 산정지침에 반영하여 매년 재 공표**하고, 사업장별 고유 특성이 반영된 배출계수에 대해서는 정부 검증을 통해 인증